

(주)앤씨앤 윤리문화 운영 절차

2025. 01. 01

(주)앤씨앤



윤리문화 운영 절차

주식회사 앤씨앤 (이하 "회사")의 윤리문화 운영 절차는 하기와 같다.

제1장 윤리문화 운영 절차

제 1 조 [윤리규범 위반 신고]

- ① 회사의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 3 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<금품(향응)등 수수 신고서>로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협력회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- ③ 회사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보자가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. 단, 제보자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두되, 자진 신고하는 경우,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 경감 사유로 둔다.
- ⑤ 제보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,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.

제 2 조 [비윤리 · 부패 행위 제보 프로세스]

- ① 비윤리 · 부패 행위 제보 프로세스는 하기의 절차를 따른다.

순서	절차 내용
(1) 신고 접수	(i) 제보자로부터 신고 내용 접수 (ii) 윤리강령 담당부서 접수자는 제보자 신원/익명성 보장 내용 전달

(2) 제보 사항 확인 및 초기 신속 보고	(i) 접수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속 보고 (ii) 사안이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대상에 부합할 경우, 윤리강령 담당부서의 장은 대표이사 (징계위원회 장 겸직)에게 신속 보고 (iii) 접수자는 신고 내용 최단 시간 사실 확인
(3) 공식 서면 보고	(i) 접수자는 지정된 서면 양식 <부패 행위 발생 보고서>으로 작성 후 윤리강령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 (ii) 사안이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대상에 부합할 경우, 윤리강령 담당부서의 장은 대표이사 (징계위원회 장 겸직)에게 상기 서면 양식으로 보고
(4) 징계위원회 개최	(i) 비윤리 행위자 소집 통보 후 징계위원회 개최 (ii) 징계 의결 (iii)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한 재심 절차 준수
(5) 처리 결과 안내	처리 결과 (징계 의결 결과 등)에 대해 비윤리 행위자 및 제보자에게 개별 안내

② 상기 절차와는 별개로 위법 행위자 신고 및/또는 위법 행위 예방의 시급성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관련 관공서 (고용노동부, 경찰, 세무서 등)에 신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접수처 정보:

접수처	연락처
(주)앤씨앤 경영기획본부 윤리경영담당자	(i) 전화번호: 02-3460-4797 (ii) 이메일: ethics@nc-and.com (iii) 우편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, A 동 5 층(삼평동, 유스페이스 1)

제 3 조 [윤리규범 위반 시 처리 방법]

- ① 윤리규범을 위반한 해당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윤리규범을 위반한 해당 임직원이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쳐 사용자 책임에 따라 회사가 그 제 3 자에게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.
- ③ 회사는 관계법령의 위반자에 대해서 윤리강령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④ 비윤리 · 부패 행위와 관련된 협력회사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 중단 등의 사후조치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제로 상정 후 그 결정에 따른다.
- ⑤ 비윤리 · 부패 행위와 관련된 협력회사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(또는 관공서)의 인사담당 부서로 사규에 따른 조치를 의뢰한다.

"끝".